

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**

2026. 2. 3.
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. 1. 16. 안미자 의원 외 6명
- 나. 회부일자: 2026. 1. 20.
- 다. 상정일자: 제281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26. 2. 3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안미자 의원】

### 가. 제안이유

- 인도 위 차량 돌진 사고, 개인형 이동장치(PM) 사고 등 이동 수단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음. 이에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방호 울타리 등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보행자 안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,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.  
(안 제9조, 신설)

## ○ 조문 수정

-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→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  
(안 제11조, 구 조례 제10조)
-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→ 사업 현장의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(안 제12조, 구 조례 제11조)

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4조
- 입법예고: 2026. 1. 8. ~ 1. 14. (제출된 의견 없음)

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### ① 조례의 제정 취지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인도 위 차량 돌진 사고, 개인형 이동장치(PM) 사고 등 이동 수단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음. 이에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방호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② 주요 제정 내용

- 신설 조항: 제9조(보행안전시설의 설치)

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. 이는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, 안전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항임.

## ○ 제11조(구 조례 제10조)의 제목 변경

기존의 “보행자 안전시설 설치”에서 “사업시행자 등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”로 개정하여, 사업시행자에게도 보행자 안전 확보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반영함. 이는 도시개발 및 공공사업 현장에서 민간의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임.

## ○ 제12조(구 조례 제11조)의 제목 변경

기존의 “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”을 “사업 현장의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”으로 변경하여, 보행권 확보의 점검 대상을 ‘사업 현장’으로 명확히 규정함. 도시정비사업 등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적용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
## ○ 조문 이동

기존 제9조~제12조를 각각 제10조~제13조로 조정함. 이는 신설 조항(제9조) 삽입에 따른 단순한 번호 이동임.

## ③ 제정 내용 검토

### ○ 제안이유

- 인도 위 차량 돌진 사고, 개인형 이동장치(PM) 사고 등 이동 수단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, 보행자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성 있음. \*24년 7월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, 25년 7월, 상암동 차량 벤치 돌진 사고 등

### ○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필요성

- ’22년-’24년, 지난 3년 간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1만 1,641건으로, 사망자는 2,739명, 부상자는 11만 3,198명 발생(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)

- 동기간 연평균 서울시 보행자 교통사고는 7,774건이 발생하였으며, 우리 구는 연간 253건으로 낮은 수준임. (서울시 자치구 중 17위)
- 평균 사망자 발생수는 5위(평균 5.6명), 부상자 수는 8위(평균 256명)로 사고 건수 대비 높음(〈표1〉 참고)
  - \* 특히 평균 사망자 발생 수는 서울시 내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로 1위인 강남구(803건)과 동일하여, 사고 발생 건수 대비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음.

〈표1〉 우리구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

연도	사고건수	사망자수	중상자수
2024년	240	5	240
2023년	277	5	279
2022년	241	7	249
평균	252.6	5.6	256

- 또한 초고령화로 인한 고령 운전자 증가 및 차량 급발진 결함 등 변화하는 사회적 요인 변화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.

## ○ 조례안의 기대효과

- 보행자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
- 보행사고 다발 구역에 대한 선제적 안전조치 가능
- 도시개발 및 공공공사 현장에서 민간 시행자의 책임 강화
- 구청의 설치 행정 및 점검·감독 권한의 법적 명확성 제고

## ④ 자치구별 조례 운영 현황

- 서울시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'24년 9월 "기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"할 수 있도록 개정
- 송파구, 강남구, 금천구, 중랑구는 "신설도로의 보도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" 하고 있음. 구·광진구와 시범 운영하고 있음

## ⑤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관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안으로,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·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보행사고 다발 구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적용 절차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실행 기준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## [별표 1] 관계 법령

###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3. 9. 15.] [법률 제19234호, 2023. 3. 14., 타법개정]

**제3조(보행권의 보장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,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, 성별, 나이, 종교,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·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

1. 시설물의 설치,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.

2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,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3. 보행정책의 수립·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.

4.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·합리적으로 조성·정비·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·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, 임산부, 어린이,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